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형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528

발 의 년 월 일 : 2024년 02월 01일
발 의 자 : 김형재, 곽향기, 김경훈, 김길영, 김용호, 김재진, 김춘곤, 남궁역, 남창진, 박성연, 박춘선, 박칠성, 송도호, 이상욱, 이영실, 이은림, 정준호, 한 · 신 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○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 불빛이 가려 어두운 도로환경을 개선코자, 가로등 주변 가로수의 식재 기준 및 가지치기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야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가로등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3조9호).

나. 가로수의 식재 기준 중 ‘가로등의 위치’를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).

다. 가로등의 빛 등의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는 즉시 가지치기를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8조).

라. 가로수로 인한 가로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빛가림 방지를 위해 가지치기를 하도록 규정함(안 제11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　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“가로등“이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시설된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해당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(이하 “가로등“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7조제1호가목 단서 중 “생장속도”를 “생장속도, 가로등의 위치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본문 중 “도로표지”를 “도로표지와 가로등의 빛”으로, “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”을 “가로수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단서 중 “신호등”을 “신호등, 가로등”으로, “안전 등”을 “안전, 빛가림 방지 등”으로 한다.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8. (생 략) <신 설>	제3조(정의) -----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"가로등"이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시설된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해당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(이하 "가로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제7조(가로수의 식재 기준)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. 1. 교목 가. 식재간격은 6~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,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,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. 나. ~ 라. (생 략) 2. ~ 4. (생 략)	제7조(가로수의 식재 기준) ----------. 1. --- 가. ----------. ---------- 생장속도, 가로등의 위치----------. 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 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) ① (생략)	제8조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삭 제	
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③ ------ 도로표지와 가로등의 빛 -------- 가로수는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11조(가지치기)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, 아름다운 수형,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, 통행공간의 확보, 전송·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.	제11조(가지치기) ① --------- ---------- 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 신호등, 가로등 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 안전, 빛가림 방지 등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.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○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(가로수의 식재 기준), 제8조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) 및 제11조(가지치기) 등 가로등 주변 가로수의 식재 기준 및 가지치기 사항을 개정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, 해당 사업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〔참고〕 2024년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7조, 제8조 및 제11조	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	13,874,695

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주 무 관 김지혜
☏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〔붙임 1〕 2024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사업설명서

□ 사업내용

○ 위 치 : 시 관리 도로

○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
○ 사업내용 : 가로수 심기 및 관리, 띠녹지 조성 및 관리, 가로변 녹지 조성 및 관리

○ 총사업비 : 13,875백만원